포상규정(3-3-12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“라 한다)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본 대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.

제3조(포상종류) 포상의 종류는 공로상과 근속상 등으로 구분한다.

제4조(공로상)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

1. 본 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자
2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
3. 행정능률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창안한 자
4. 각종 대내·외 행사 및 교육훈련 등에서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

제5조(근속상) ① 근속상은 교직원(교원은 전임교원, 직원은 일반직 및 기술직에 한함)으로서 장기 근속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10년, 20년,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.(개정 2018.04.25.)

② 근속기간은 건양학원 및 산하기관(건양중・고등학교, 건양대학교병원, 건양사이버대학교, 건양대학교 부속유치원 등)에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.(신설 2018.04.25.)

③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연월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년 5월 16일(개교기념일)까지로 한다.

제6조(포상권자) 포상권자는 법인 이사장 및 본 대학교 총장으로 한다.

제7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 포상 후보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.

제8조(포상심의) 포상은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포상시기) 포상은 본 대학교 개교기념일을 정기 포상일로 하고,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① 포상 시 부상으로 상품(현금포함) 제공 및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다.(개정 2018.04.25.)

② 근속상에 대한 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신설 2018.04.25.)

1. 근속 10년 상 : 상패 및 현금 100만원
2. 근속 20년 상 : 상패 및 현금 200만원
3. 근속 30년 상 : 상패 및 현금 300만원

제11조(이중포상 금지)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10조 제②항은 2018년 5월 16일 기준 근속상 대상 교직원부터 적용한다.